

인천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나71448 판결 [건물명도]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나7144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44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9.

판결선고 2024. 5.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44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합의 6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원고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밝히고 있으나 법률상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범준, 판사 진희원, 판사 이형우

별지